

정 관 변 경 사 유 서

[제 정 . 개 정 이 유]

「일부개정」

1. 개정, 주요골자

1) 관련: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2890(2022-03-30)

사립대학정책과-3377(2022-04-12)

의거하여 「사립학교법」에 부패방지를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법인 성서침례학원 정관에 반영하여 제·개정하기로 한다.

2) 또한 「사립학교법」개정에 의해 학교법인 성서침례학원 정관 ‘제12조의2,3’, ‘제13조’, ‘제17조의1’, ‘제18조’, ‘제25조’, ‘제27조의1,2’, ‘제77조의3’, ‘제82조’ 등을 개정 및 신설 하여 이 법인의 정관에 반영, 제·개정하였다.

3) 관련: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1485(2022-02-15) 의거하여 제77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기금’ 중복 단어 와 부칙 제2조(개정사항) 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한다.